

장애인복지시설우대종합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 가입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재물)의 특성 및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 또는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지급사유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기본계약	재산손해	화재(벼락포함)로 인한 재물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기본계약	신체손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관련된 특정단체의 장애인복지시설 생활(활동)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기본계약	배상책임손해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선택계약	주차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재산손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합니다.

$$\text{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상해보험금

- 사망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 장애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배상책임보험금

-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

만 보상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해당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예시

□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회사가 대표적으로 정하는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료 예시

- 보험기간 : 1년
- 건물구조 : 콘크리트조 슬라브집 콘크리트외벽(구조급수 1급)
- 보장내용 및 목적물 상세정보 : 재산손해(층수: 2층, 업종: 상기 이외의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신체손해(피보험자 인원수: 10명), 배상책임(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수용인원: 10명)

보장명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영업보험료
기본계약	재산손해	1억원		6,000원
기본계약	신체손해(후유장해)	1억원		280,000원
기본계약	신체손해(사망)	1억원		290,000원
기본계약	배상책임(대인)	1억원	1백만원	108,750원
기본계약	배상책임(대물)	1억원	1백만원	19,600원
계				704,350원

※ 상기보험료는 요율변동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